

# 현금IC카드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1. 개정 시행일 : 2016. 10 .24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제 1 조(적용범위)</p> <p>① 「하나 현금 IC 카드」(이하 “현금 IC 카드”라 함)란 IC 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 입출금기, 무인공과금 수납기(이하 “자동화기기”라 함)를 이용하여 예금거래를 하거나 현금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이 제공하는 카드를 말하며, 현금 IC 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본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p> <p>② (내용생략)</p> <p>제 2 조(용어의 정의) ~ 제 5 조(카드출금 비밀번호 및 PIN의 신고)</p>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생략)</p> <p>제 6 조(현금 IC 카드에 의한 거래)</p> <p>① ~ ④ (내용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⑤ (내용생략)</p> <p>⑥ (내용생략)</p>	<p>제 1 조(적용범위)</p> <p>① 「하나 현금 IC 카드」(이하 “현금 IC 카드”라 함)란 IC 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 입출금기, 무인공과금 수납기(이하 “자동화기기”라 함)를 이용하여 예금거래를 하거나 <u>현금카드 제휴처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u> 현금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이 제공하는 카드를 말하며, 현금 IC 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본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p> <p>② (좌동)</p> <p>제 2 조(용어의 정의) ~ 제 5 조(카드출금 비밀번호 및 PIN의 신고)</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제 6 조(현금 IC 카드에 의한 거래)</p> <p>① ~ ④ (좌동)</p> <p><u>⑤ 예금주는 카드로 제휴한 제휴처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거래예금의 인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u></p> <p>⑥ (좌동)</p> <p>⑦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이용가능 매체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이용가능 매체추가</p>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제 7 조(현금자동자급기 거래명세 확인) ~ 제 9 조(현금 IC 카드의 재발급) (내용생략)</p>	<p>제 7 조(현금자동자급기 거래명세 확인) ~ 제 9 조(현금 IC 카드의 재발급) (좌동)</p>	
<p>제 10 조(현금 IC 카드 출금비밀번호 오류 및 사용중지) ① ~ ④ (내용생략) (신설)</p>	<p>제 10 조(현금 IC 카드 출금비밀번호 오류 및 사용중지) ① ~ ④ (내용생략) <u>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시 일시적으로 카드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u></p>	이용가능 매체추가
<p>제 11 조(이용한도 및 이용시간) ① ~ ② (내용생략) (신설)</p>	<p>제 11 조(이용한도 및 이용시간) ① ~ ② (좌동) <u>③ 제휴처 결제단말기를 이용한 인출 거래에 대한 이용한도와 이용시간은 이용자가 인식하기 용이한 별도 장소(제휴처 등)에 게시합니다.</u></p>	이용가능 매체추가
<p>제 12 조(수수료) ① (내용생략) ②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카드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수하며 은행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자동화기기에 게시합니다.</p>	<p>제 12 조(수수료) ① (좌동) ②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카드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수하며 은행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자동화기기에 게시합니다. <u>다만, 제휴처 결제단말기를 통한 인출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이용자가 인식하기 용이한 별도 장소(제휴처 등)에 게시합니다.</u></p>	이용가능 매체추가
<p>제 13 조(손실부담 및 면책) ~ 제 15 조(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 (내용생략)</p>	<p>제 13 조(손실부담 및 면책) ~ 제 15 조(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 (좌동)</p>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제 16 조(카드의 이용제한)</p> <p>① 1 회 100 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범위 내에서 30 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됩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② (내용생략)</p> <p>제 17 조(준용규정) ~ 제 18 조(관할법원) (내용생략)</p>	<p>제 16 조(카드의 이용제한)</p> <p>① 1 회 100 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범위 내에서 30 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됩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와 <u>제휴처 결제단말기를 통해 인출하는 경우는</u>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② (좌동)</p> <p>제 17 조(준용규정) ~ 제 18 조(관할법원) (좌동)</p>	<p>이용가능 매체추가</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